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44317(본소), 2022나204432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반환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44317(본소), 2022나2044324(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합55992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김성염

변론 종결 2023. 1. 12.

판결 선고 2023. 2.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합559925(본소),
2021가합569076(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 D, E, F은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10. 26.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 D, E, F은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10. 26.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나. 예비적 반소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82,777,7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 9행의 '2020. 10. 26. 사인증여계약'을 '2020. 10. 26.자 부담부증여 내지 사인증여 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사인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 내지 사인증여 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및 제13행의 '사인증여'를 '증여'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사인증여'를 '증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망인이 자필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다음 거기에 지장을 찍어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갑 제10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은 그 작성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기재만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원고의 2023. 2. 2.자 참고자료, 2023. 2. 7.자 참고서면, 2023. 2. 8.자 참고서면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강상욱

판사송미경

별지